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 관련 1533 제안년월일 : 2020년 6월 16일

제 안 자: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 개정안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공사 등에 대해 노동이사의 운영실태와 경영참여 실적을 점검하여 '기관평가'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,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로 확대해석될 수 있어 서울시 주관 '자체 기관평가'로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○ 노동이사의 경영참여 실적을 자체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수정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
다. 기 타 : 해당 없음.

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의2제2항 중 "경영참여 실적을 점검하여 기관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."를 "경영참여 실적을 점검하여 자체 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"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	행	개 정 안	수 정 안
	<신 설>	제3조의2(시장의 책무)	제3조의2(시장의 책무)
		① (생략)	① (개정안과 같음)
		② 시장은 노동이사제를	② 시장은 노동이사제를
		도입한 공사 등에 대하여	도입한 공사 등에 대
		노동이사의 운영 실태와	하여 노동이사의 운영
		경영참여 실적을 점검하여	실태와 <u>경영참여 실적을</u>
		기관평가 등에 반영하도록	점검하여 자체 기관평가
		<u>하여야 한다.</u>	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
			<u>노력하여야 한다.</u>

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을 "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제1조 및 제14조 중 "노동자이사제"를 각각 "노동이사제"로 하고, 제2조부터 제13조 까지 "노동자이사"를 각각 "노동이사"로 한다.

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- 제3조의2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노동이사제가 올바르게 정착·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공사 등에 대하여 노동이사의 운영 실태와 경영참여 실적을 점검하여 자체 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3조의3(기관장의 책무) ①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이 조례의 목적 달성과 정당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 - ②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노동이사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노동이사의 불이익 금지 등) ① 기관장은 임금 및 복지후생, 교육·배치,

- 승진·전보 등 노동조건에 있어 노동이사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되며, 노동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노동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또한 같다. ②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
- ③ 시장 또는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·훈련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습기회·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등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.
- ④ 노동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 밖에 노동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은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한 시간으로 본다.
- ⑤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임기 종료 등의 사유로 직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적합한 부서에 배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정보제공 및 편의제공을 하여야 한다.

- 제2조(노동자이사제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임명한 노동자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임명한 노동이사로 본다.
- 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제8조(임원) ① 재단의 임원으로는 이사장 1인, 상임이사 2인이내, 비상임이사 5인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. 이 때 비상임이사 1인은 「서울특별시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동이사로 할 수 있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성 안
서울특별시 <u>노동자이사제</u> 운영에	서울특별시 <u>노동이사제</u> 운영에 관한
관한 조례	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	제1조(목적)
제9조,「지방공기업법」제49조,	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	
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	
서울특별시 공사·공단·출연기관에	
<u>노동자이사제</u> 를 운영하는데 필요한	<u>노동이사제</u>
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	
참가를 통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간	
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	
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, 대시민	
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	
그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	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~ 3. (생략)	1.~ 3. (현행과 같음)
4. " <u>노동자이사</u> "란 공사 등의 소속	4. "노동이사"
노동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	
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(이하	
"시장" 이라 한다) 또는 기관장이	
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.	
5. (생략)	5.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3조2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노동 이사제가 올바르게 정착·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공사 등에 대하여 노동이사의 운영 실태와 경영참여 실적을 점검하여 자체 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<신 설>	제3조의3(기관장의 책무) ①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이 조례의 목적 달성과 정당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 ②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노동 이사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4조(대상기관) ①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<u>노동자이사</u> 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의결로 <u>노동자이사</u> 를 둘 수 있다.	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임명) ① <u>노동자이사</u> 는 지방	제5조(임명) ① <u>노동이사</u> 는
공기업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·	
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과	
공사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	
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	
따라 임명한다.	
② <u>노동자이사</u> 의 임명과 관련하여	② <u>노동이사</u>
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	
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.	
③ <u>노동자이사</u> 로 임명되는 사람이	③ <u>노동이사</u>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	
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	
사임하여야 한다.	
1.~2. (생략)	1.~2. (현행과 같음)
제6조(자격) ① 노동자이사는 공사	제6조(자격) ① 노동이사
등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	
재직한 사람으로 한다.	
2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3
하는 사람은 <u>노동자이사</u> 가 될 수	노동이사
없다. 임명시 또는 임명후에도	
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	·
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.	
1.~3. (생략)	1.~3. (현행과 같음)
• • •	, <u> </u>
제7조(정수) 공사 등에 두는 <u>노동자</u>	제7조(정수) <u>노동</u>

현 행	개 정 안
<u>이사</u> 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	<u>OI 사</u>
따른 노동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	
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	
정관으로 정한다. 이 경우 <u>노동자</u>	<u>노동</u>
<u>이사</u> 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	<u>이사</u>
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	
1.~2. (생략)	1.~2. (현행과 같음)
제8조(임기) <u>노동자이사</u> 의 임기는	제8조(임기) <u>노동이사</u>
관련 법령이나 조례, 정관으로	
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<u>노동자</u>	<u>노동</u>
이사의 노동계약(「근로기준법」제2조	이사
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)이	
종료되는 경우에는 <u>노동자이사</u> 의	<u>노동이사</u>
임기와 관계없이 <u>노동자이사</u> 의	<u>노동이사</u>
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.	
제9조(권한) ① <u>노동자이사</u> 는 관계	제9조(권한) ① <u>노동이사</u>
법령 및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	
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	
가진다.	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책임 등) <u>노동자이사</u> 는「지방	제10조(책임 등) <u>노동이사</u>
공기업법」,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	
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	
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	

현 행 개 정 안

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제11조(제척・회피) ① <u>노동자이사</u>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② <u>노동자이사</u>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·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2조(기관장의 책무) ① 기관장은 외국 등 노동조건에 있어 노동자 ① 기관장은 의국 및 복지호색

- 제12소(기관상의 책무) ① 기관상은 임금 등 노동조건에 있어 노동자 이사를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, 노동자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노동자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또한 같다.
 - ② 기관장은 노동자이사의 임명 및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, 기본적인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시장 또는 기관장은 노동자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·훈련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

- ① 기관장은 임금 및 복지후생, 교육·배치, 승진·전보 등의 노동 조건에 있어 노동이사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되며, 노동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노동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또한 같다.
 - ②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 및 편의제공을 하여야 한다.
 - ③ 시장 또는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·훈련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습기회·

현 행	개 정 안
④ 제3항에 따른 학습기회·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등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. ⑤ 노동자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 밖에 노동자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은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한 시간으로 본다.	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등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. <삭 제> ④ 노동이사
제13조(수당 등) ① <u>노동자이사</u> 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	부서에 배치하여야 한다. 제13조(수당 등) ① <u>노동이사</u>
원칙으로 한다. ② <u>노동자이사</u> 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수 있다. ③ (생략)	 ② <u>노동이사</u> ③ (현행과 같음)
제1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<u>노동자</u> <u>이사제</u> 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	제1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<u>노동</u> <u>이사제</u>

현 행	개 정 안
따른다.	